

 보건복지부 <small>MINISTRY OF HEALTH & WELFARE</small>	보도자료	배 포 일	1월4일	매 수	총5매	
		보도일시	보도참고자료			
	사회서비스 기획팀	팀 장	조남권	전 화	02)500-5575 지역번호 없이 129	
		사 무 관	오춘수	E-Mail	02)500-5583 ocs@mohw.go.kr	

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변경 주요내용

〈주요내용〉

-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임
 - 동 서비스 지원대상은 2007년도 37천명에 비해 18% 증가한 44천명으로 늘어나게 되며, 예산은 2007년도 199억원에 비해 28% 증가한 254억원을 투입할 계획임
-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% (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,408천원) 이하의 가정 산모임
 - ※ 해산급여 해당자는 50만원을 지급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
 -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추어 출산(예정)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함
 - ※ 소득확인서류: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

-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간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되어 산전·후 건강관리, 가사지원(식사 준비 등), 신생아 건강관리,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함
 - 쌍태아는 18일, 삼태아는 24일 서비스 제공
 - 특히 중증장애인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24일 서비스 제공('08년도 신규 지원)
- '08년 2월부터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가격을 인상(07년 550천원 → 08년 613천원)할 예정임
 - 또한 동 서비스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46천원(서비스 가격 613천원의 7.5%)을 납부토록 할 계획임
- 서비스 가격 인상과 병행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확대할 방침임
 - 교육시간 확대 : '07년 40시간 → '08년 80시간
 - 교육비지원 확대 : 1,700명에게 총2억5천만원(1인당 148천원)
-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에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도입하여 지불·정산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줄이고, 서비스 대상자별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음
 - * 노인돌보미,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'07. 4월부터 전자바우처 도입·시행

<참 고>

산모·신생아도우미 사업 업무 흐름도

절 차	내 용
서비스 신청 ↓	● 본인 및 가족 등이 보건소에 신청
조 사 ↓	● 보건소 담당공무원 - 소득·재산, 출산(예정) 여부 등 확인
결정·통지 ↓	● 보건소 - 본인에게 결정 내용 통지 - 사회서비스관리센터(이하 '관리센터')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
바우처 카드 발급 ↓	● 관리센터 : 전담 금융기관으로 발급 대상자 자료 송부 ● 전담 금융기관 :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·송부
본인부담금 납부(선납) ↓	● 서비스 대상자 -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→ 바우처 생성
서비스 관리	● 보건소 - 대상자 관리 -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- 바우처 관리

2008년 「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」 이용 안내문

1. 선정기준

출산가정의 소득·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

- 소득기준 :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% 이하

가구원 수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8인
소득 기준 (천원/월)	1,718	2,099	2,408	2,555	2,636	2,718	2,918

- 재산기준

- 배기량 2,500cc이상이고 평가액 3,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
(단, 장애인용, 생업용 차량은 예외)

- 출산(예정) 여부

- 출산(예정)일 전 6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
· 사산 및 유산도 포함(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)

제외대상

- 해산급여 대상자(해산급여 50만원 지급)
- 민관협약사업(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)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

2. 신청방법

신청권자 : 산모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
신청장소 : 산모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

-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관련 서류 송부

제출서류

- 신청서,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, 가구원 소득증명자료(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), 출산(예정)일 증명자료

바우처 카드 발급

- 서비스 신청시 보건소(또는 보건지소)에 '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' 제출
-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

- 전담 금융기관(KB 국민은행)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
- 카드의 종류는 KB 신용카드, KB 체크카드, 바우처 전용카드가 있으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결제 계좌 필요

3. 지원내용

□ 서비스 기간,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
구분	서비스 제공기간	정부 지원액	본인 부담금
단태아	2주(12일)	567,000원	48,000원
쌍생아	3주(18일)	1,133,970원	48,000원
삼태아 이상, 중증장애인 산모	4주(24일)	1,701,000원	48,000원

※ 중증장애인 : 장애등급 2급 이상

● 본인부담금 납부

- 납부시기 : 서비스 이용 이틀 전(공휴일 제외)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
- 납부방법 :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, 인터넷·폰뱅킹·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

※ 통보된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

□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시간

-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용 가능 (서비스 개시일 기준)
 -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
- 이용시간 : 월~금요일(09:00~18:00), 토요일(09:00~16:00), 1일 1시간 휴식시간 포함
-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산모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: 1일 8시간, 2주 12일 범위 내

□ 이용 가능 서비스

- 산모의 영양관리(산모 식사),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, 산모신생아 방청소, 저녁 식사 상차림, 신생아 건강관리,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등
- 필요시 좌욕기, 유축기 등 산모·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

□ 서비스 변경

- 서비스 도중 제공기관 변경은 불가하나, 이용자의 불만족으로 제공자(제공인력) 변경 요청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5일 이내에 제공자 변경할 수 있음